

2012. 7. 17.(화) 10:00

제1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
2.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5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5.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 20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 마. 의안번호: 제2012 - 47호

2.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고 있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심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2조)
 -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삭제)
-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변경함(안 제3조)
 - 군수 ⇒ 부군수로 변경함
-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에, 잔여기간 ⇒ 남은 기간,
월 ⇒ 개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 심의 기능(긴급복지지원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군수 ⇒ 부군수)을 변경하는 등 체계와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 기 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한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 마. 의안번호: 제2012 - 48호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4종)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2조)

-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3조)

-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기금은 용도별로 관리, 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 ~ 제12조)

- 노인복지사업: 군내 노인관련 단체
- 여성복지사업: 군내 여성관련 단체 및 여성관련 사업 수행 단체 등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으로 나누어 지원
- 기초생활 지원사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 생활안정 지원사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

바.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3조)

사.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각 각 다른 조례로 제정·운용되어오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등 사회복지관련 유사기금(4종)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명시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를 두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해당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별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주민생활지원실장)과 기금출납원(담당주사)을 두고 기금관리 대장과 지출 증빙 서류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과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토록 하였고
 -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사한 기금의 통합관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 마. 의안번호: 제2012 - 49호

2. 개정이유

- 이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4급 이상 1% 이내, 5급 6.7% 이내, 6급 28.2% 이내, 7급 31%이내, 8급 25.3% 이내, 9급 7.8% 이상
 - 조정: 4급 이상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8% 이내, 7급 31%이내, 8급 26% 이내, 9급 7% 이상
- 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6급 10% 이내, 7급 23% 이내, 8급 23% 이내, 9급 44% 이상
- 조정: 6급 11% 이내, 7급 25% 이내, 8급 23% 이내, 9급 41%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정원: 증 2명
 - 현행: 650명(본청269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5명, 사업소 54명, 읍39명, 면149명)
 - 조정: 652명(본청272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6명, 사업소 54명, 읍38명, 면148명)
- 일반직 6급 이하: 증 9명
 - 현행: 514명(본청220명, 의회5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4명, 읍34명, 면136명)
 - 조정: 523명(본청227명, 의회7명, 직속기관86명, 사업소34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감 7명
 - 현행: 64명(본청31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2명)
 - 조정: 57명(본청27명, 의회4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1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012년 전환인원(7명)과 총액인건비 국가시책 기준정원 반영(2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650명 →652명(2명 증원)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636명 →63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별표2 일반직공무원 정원조정

구 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정원	553명	4명	35명	151명	171명	139명	53명
	비율	100%	1%이내	6.7%이내	28.2%이내	31%이내	25.3%이내	7.8%이상
조정	정원	562명	4명	35명	151명	172명 (1명)	144명 (5명)	56명 (3명)
	비율	100%	0.7%이내	6.2%이내	26.9%이내	30.6%이내	25.6%이내	10%이상
	조정율	100%	1%이내	7%이내	28%이내	31%이내	26%이내	7%이상

- 안 별표2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행	정원	64명	6명	14명	14명	30명
	비율	100%	10%이내	23%이내	23%이내	44%이상
조정	정원	57명	6명	14명	10명 (-4명)	27명 (-3명)
	비율	100%	11%이내	25%이내	23%이내	41%이상

○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총액 인건비 국가시책 기준정원 반영 내용을 조정하기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 마. 의안번호: 제2012 - 50호

2. 개정이유

-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정수의 1/3이상 이어야 함
-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1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이상이어야 하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함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 마. 의안번호: 제2012 - 51호

2. 개정이유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5조)
 -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의 받아야 함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
 요한 사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금,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수입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토록 규정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기금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시설관리사업소장)과 기금출납원(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을 두도록 함
- **안 제8조**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시설관리사업소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며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 마. 의안번호: 제2012 - 56

2. 변경이유

- 스포츠파크 내 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기획재정부소관 9필지 11,977m²)을 취득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 심소정 숲(유전자 보호림)과 연계한 주변의 전답 23필지 22,345m²를 매입하여 황강천변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합천댐 수자원보호 및 체험하는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산의 표시

(단위: m²/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지목	수량	기준가격	비고
계		32건		34,322	374,890	
스포츠파크 내 국유재산(기획재정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1086-1번지 외 8필지	잡종지	11,977	125,757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43-1번지 외 22필지	계	22,345	249,133	
			전	8,669	95,871	
			답	13,318	150,094	
			임	358	3,16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스포츠파크 내 국유재산 취득안**은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86-1번지 외 8필지 11,977m²(기획재정부 소관)의 잡종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잡종지 9필지 11,977m²는 스포츠파크 조성 전 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이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현재는 종전 재산의 형태를 찾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스포츠파크 내의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각종 체육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안**은 심소정 숲 주변 황강천변의 토지(전, 답, 임야) 23필지 22,345m²를 매입하여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심소정과 연접한 황강천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학습장으로 조

성함으로써 합천댐 수자원 보호 및 학생들에게는 생태학습장으로
군민들에게는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매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